

第207回國會 政治改革立法 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國會事務處

日時 1999年9月7日(火)
場所 特別委員會會議室(501號)

議事日程

-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審査된案件

-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1面

(14시16분 개의)

○委員長 安東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
다.

○立法調査官 朴出海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安東善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번 회의때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
이 오늘 여기에 참석하셨으므로 인사를 드리는 기
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思哲 위원님 인사하시지요.

○李思哲委員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東善 다음은 鄭亨根 위원님.

○鄭亨根委員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東善 다음 薛勳 위원님.

○薛勳委員 제발 정치개혁이 되기를 기대하겠
습니다.

○委員長 安東善 다음 金基洙 위원님.

○金基洙委員 지난번 상견례때 못 나와서 죄송합
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金基洙입니다.

○委員長 安東善 그런데 아직도 출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14시19분)

○委員長 安東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정기국회가 개최되면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
등 국회일정이 바빠지는 반면 정치관계법 심사활
동에 그만큼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위원회 위원 여러
분들과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간사위원간
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간사님들께서는 그 동안
국회관계심사위원회는 간사간 합의에 의해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국회관계
법에 대하여는 상당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선거관계심사소위원회 및 정당관계심사
소위원회는 아직 심사활동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 회의 전에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에 모여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의견을 나눈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합의사항은 申榮國 위원님
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國委員 申榮國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특위에 3개 소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회관계
소위는 10여차례 이상 회의를 거듭해서 국회관계
소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래서 지금은 인사청문회관계만 빼놓고는 거의 여
야 간에 합의를 본 형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선거관계소위하고 정당관계소위

는 그 동안에 우리가 회의를 열지 못 했는데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도 있고 또 국회 일정으로 보아서 이제는 서둘러야 할 입장이 되어서 위원님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이번 주부터는 나머지 2개 소위도 함께 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3당 간사가 합의한 일정은 매주 화요일 2시에는 국회 관계소위, 수요일 2시에는 선거관계소위, 목요일 2시에는 정당관계소위 이렇게 3당 간사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회의를 하면서 그때그때 일정 조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일단은 3개 소위를 전부 함께 가동한다는 뜻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東善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바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國 위원 말씀하세요.

○申榮國委員 방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다고 국회법관계소위는 10여 차례 이상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여야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지한 가지 인사청문회 관계가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동의를 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단지 합의를 못 본 것은 소위 빅4라고 해서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은 합의를 못 보았는데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9월23일부터 시작되는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임기 재신임을 앞두고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번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미합의된 빅4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로 계속해서 심의하기로 하고 우선 여야 간에 합의를 본 것부터라도 빨리 우리 특위에서 합의를 보아서 이번 9월 정기국회때부터 바로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시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安東善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基洙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基洙委員 이번에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는 이 문제들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각 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매주 화요일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각 당에서 입장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그 입장을 가지고 원내총무끼리 합의를 한 연후에 우리가 회의를 해야만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결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시간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께서 간사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각 당 간의 합의, 진척의 진도를 보아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곧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회의, 상위활동이 시작되고 또 예결위에 관여한 사람들은 대단히 시간에 쫓길 뿐만 아니라 이제 선거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지역행사에 무수히 참여해야 되는데 아무런 토의를 안 하면서 그날로 잡아 놓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에 있어서나 또는 우리 회의운영에 있어서나 상당히 손실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東善 李相洙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相洙委員 우선 그 동안 국회법소위는 몇 차례 모임을 가져서 아주 생산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 있었던 정치관계 특별위원회에서 두 가지 문제가 타결이 안 되고 넘어 왔는데 이번 정치관계특위, 국회법소위에서는 그 문제를 서로 타협을 통해서 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정부질문 방법에 관해서도 여야가 의견의 접근을 보았고 또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해서 야당이 흔쾌하게 양보를 해주셔서 거의 타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회의가 끝나고 다시 국회법 소위가 열리게 되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인사청문회제도를 야당이 양보했는데 단순히 국회법만을 고치고 세부절차는 국회규칙에 맡기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기왕 국회가 주도해서 이 개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예 인사청문회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절차를 확정짓는 것이 옳은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따 국회법 소위에서 그 부분에 관한 우리의 현명

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선거법 소위에 관해서 아직도 각 당의 입장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모이는 것이 시간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선거법 개정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라든지 이런 큰 결단을 내리는 문제 외에도 아주 많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능한 부분은 계속 합의를 해 나가면서 마지막 합의 안 되는 부분은 당 지도부의 결단에 맡길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선거법 소위를 열고 논의를 해나가면 충분히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사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앞으로 선거법 소위도 계속 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東善 金學元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學元委員 우선 申榮國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의, 여야간에 합의를 본 안부터 먼저 본회의에 넘겨서 통과시키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입니다. 특히 국회법 분야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서로 토론도 했고 인사청문회법에 관한 합의가 되면 국회법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손댈 필요가 없이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을 지어서 본회의로 넘기고 인사청문회절차에 관한 법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결말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화, 수, 목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하자고 그러는 것,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가령 선거관계법소위원회, 정당법소위를 열면서 소위원장과 소위원들이 서로 의논하고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반드시 매주 열지 않더라도 어느 한 주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간사들끼리 합의한 안은 원칙적인 것이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이 협의하면 잘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安東善 柳宣浩 위원 말씀하세요.

○柳宣浩委員 아까 申榮國 간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나라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되는 것대로 가급적이면 먼저 하는 것이 옳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법은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국민의 알 권리,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도입하는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엄

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또 당사자들도 엄청나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것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치구조개혁특별위가 국회법등 이렇게 해서 관계법을 함께 다루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차체에 인사청문회법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절차를 영구히, 대대손손 공정하고 적정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사법조사,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주체가 과연 해당위원회가 될 것인지 특별위원회가 될 것인지 또 공개여부 그리고 심사방식 이런 것들이 모두 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헌법에 규정된 국회동 의와 국회선출직 여러 분이 직을 떠남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저희들의 과제를 생각하면 과연 이번 인사청문회법을 만들어서 새로 보직을 받는 분들이 가능할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제도도 입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졸속히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빠른 방법으로 준비가 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東善 金高盛 위원.

○金高盛委員 金高盛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할 것만 나누고 이미 국회법소위에서 다루어진 것을 여기서 포괄적으로 논의하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각 당에서 소위별로 토의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東善 申榮國 위원.

○申榮國委員 사실 전체회의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柳宣浩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관계법은 제1국회법소위를 하면서 2차엔가 3차엔가 일찍이 여야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柳宣浩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급박하게 된다는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부 국회직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동의하는 직은 국회법소위에서 초반에 여야 합의가 된 것인데 단지 3,4개항만 합의가 안 돼서 걸려있던 것입니다.

柳宣浩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초반에 원칙적인 여야합의를 봤으니 국회관계법소위에서 세부사항만 타결해 내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東善 그러면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작해가지고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단지 국회법만 다루는 위원회가 아니고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분야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로 이런 문제를 함께 합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각 소위원회는 국회법소위원회와 같이 여야간에 또 위원 전체의 의견이 도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국정감사가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특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다른 문제보다도 우선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어야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정당관계법소위, 목요일 오후 2시에 선거법소위가 각각 개회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出席委員

安東善	申榮國	李思哲	李相培
鄭亨根	李相洙	南宮鎭	徐勳
宋勳錫	柳宣浩	李圭正	金學元
金高盛	金基洙	許南薰	

○出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朴	奉	國
專	門	委	員	俞	炳	坤
專	門	委	員	安	秉	玉
專	門	委	員	林	仁	圭

【報告事項】

○議案回附

國會法中改正法律案(96년9월11일 金炯旻議員外 138人 發議)

國會法中改正法律案(96년11월1일 朴相千·李廷武·

李海瓚·許南薰·鄭均桓·李健介·柳宣浩·李良熙·李相洙·黃鶴洙·辛基南·池大燮·千正培·南宮鎭·李元範議員外 112人 發議)

國會法中改正法律案(96년12월12일 姜慶植·金民錫·辛基南·劉容泰議員外 35人 發議)

國會法中改正法律案(97년11월7일 金民錫·金洪信·柳宣浩·李美卿·李在善議員外 17人 發議)

國會法中改正法律案(97년11월28일 金秉泰議員外 20人 發議)

國會法中改正法律案(98년1월16일 李信範·鄭義和·宋勳錫·金洪信·金忠一·權五乙議員外 21人 發議)

國會法中改正法律案(98년8월19일 李信範議員外 23人 發議)

國會法中改正法律案(98년12월14일 安商守議員外 33人 發議)

國會法中改正法律案(99년1월26일 權五乙·盧基太·李揆澤·鄭亨根·金道彥·朴寬用·洪準杓·趙雄奎·吳陽順·梁正圭·李榮一·趙鎮衡·安商守·徐相穆·朴承國·李思哲議員外 120人 發議)

國會法中改正法律案(99년1월27일 權五乙·盧基太·李揆澤·鄭亨根·金道彥·朴憲基·李國憲·崔鉛熙·吳陽順·李榮一·趙鎮衡·安商守·徐相穆·朴承國·趙雄奎·梁正圭·李思哲議員外 119人 發議)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96년11월29일 姜慶植·金民錫·辛基南·劉容泰議員外 35人 發議)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98년9월4일 李信範·鄭義和·金文洙·宋勳錫議員外 20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97년7월1일 趙誠俊·金七煥·權五乙議員外 22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97년3월19일 金秉泰議員外 55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97년6월28일 洪思德議員外 19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97년7월5일 金秉泰·金弘一·金景梓·鄭漢裕·千容宅·李相洙·趙漢天議員外 28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98년1월4일 李相洙·李良熙議員外 108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98년3월5일 李國憲議員 등 108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98년3월20

일 金重緯·柳興洙·咸鍾漢·朴憲基·李在五·洪準杓·李義翊·李在昌·朴鍾雨·崔鉛熙·姜賢旭·李相培·尹漢道·全錫洪·吳陽順·李美卿議員外 142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98년3월5일 金復東·金忠兆·姜昌熙·鄭均桓·朴九溢·朴相千·李廷武·韓和甲·具天書·金元吉·李台燮·李協·李相洙·鄭一永·李良熙·柳宣浩·趙永載議員外 104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98년8월18일 金仁坤議員外 56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98년9월2일 秋美愛議員外 23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98년12월3일 鄭東泳·金元吉·韓和甲議員外 102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99년4월19일 安商守議員 등 134人 發議)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99년5월19일 李健介議員外 20人 發議)

自治區·市·郡議長選舉등에관한特別法案(98년3월20일 金重緯·柳興洙·咸鍾漢·朴憲基·李在五·洪準杓·李義翊·李在昌·朴鍾雨·崔鉛熙·姜賢旭·李相培·尹漢道·全錫洪·吳陽順·李美卿議員外 142人 發議)

選舉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96년11월11일 李廷武·朴相千·許南薰·李海瓚·李健介·金珍培·邊雄田·千正培·李良熙·李相洙·權秀昌·辛基南·黃鶴洙·柳宣浩·鄭相千·趙舜衡議員外 112人 發議)

選舉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97년8월25일 李廷武·朴相千·具天書·金珍培·李健介·趙贊衡·趙永載·辛基南·李良熙·柳宣浩·鄭宇澤·秋美愛·李在善議員外 110人 發議)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96년11월1일 李廷武·朴相千·李健介·鄭均桓·李良熙·柳宣浩·黃鶴洙·李相洙·池大燮·辛基南·權秀昌·千正培·朴九溢·金玉斗·金高盛·金忠兆議員外 112人 發議)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98년4월1일 李龍三議員外 27人 發議)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4월19일 安商守議員 등 134人 發議)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4월27일 李相洙·張永喆·孫世一·金榮煥·南宮鎮·朴鍾雨·柳宣浩·劉容泰·鄭東采·林采正議員外 95人 發議)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7월6일 李信範·鄭義和·柳鍾洙·金命潤·黃圭宣議員外 30人 發議)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7월6일 李信範·鄭義和·柳鍾洙·金命潤·黃圭宣議員外 30人 發議)

政黨法中改正法律案(96년11월11일 朴相千·李廷武·金珍培·李健介·千正培·邊雄田·李相洙·李良熙·辛基南·權秀昌·柳宣浩·黃鶴洙·鄭相千議員外 114人 發議)

政黨法中改正法律案(97년8월25일 朴相千·李廷武·金珍培·具天書·趙贊衡·李健介·辛基南·趙永載·柳宣浩·李良熙·秋美愛·鄭宇澤·李在善議員外 110人 發議)

政黨法中改正法律案(98년12월3일 金玉斗·柳宣浩·金元吉·韓和甲·李相洙·金令培·金忠兆·朴鍾雨·元裕哲·李聖浩·張誠源·秋美愛·洪文鐘議員外 92人 發議)

政黨法中改正法律案(4월19일 安商守議員 등 134人 發議)

이상 38건 8월13일자 회부됨.

○請願回附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改正에관한請願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改正에관한請願
國會法改正에관한請願

(이상 3건 1997년6월3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김중배로부터 李相洙·柳宣浩·李美卿議員外 1人的 紹介로 提出)

國會法등國會關係法改正에관한請願

(1997년7월15일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8-2번지 백호빌딩 4층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 이창복으로부터 千正培議員의 紹介로 提出)

國會法改正에관한請願

國政監査調査에관한法律改正에관한請願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改正에관한請願
(이상 3건 4월9일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5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건外 2人으로부터 柳宣浩議員의 紹介로 提出)

바른選舉文化定着을위한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에관한請願

(1996년11월26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손봉호外 17人으로부터 金相賢議員外 3人的 紹介로 提出)

政治資金에 관한法律改正에 관한請願

(1997년2월12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공명 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손봉호외 3人으로부터 金洪信議員 紹介로 提出)

政治資金에 관한法律改正에 관한請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에 관한請願

(이상 2건 1997년3월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인상으로부터 方鏞錫議員外 11人의 紹介로 提出)

政治資金에 관한法律改正에 관한請願

政黨法改正에 관한請願

選舉管理委員會法改正에 관한請願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에 관한請願

(이상 4건 1997년5월29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김중배로부터 李相洙·柳宣浩·李美卿議員外 1人의 紹介로 提出)

在外國民選舉權保障에 관한請願

(1997년6월27일 1300 E. Grand River APT #13 East Lansing, Michigan 48823 U.S.A 김영태外 137人으로부터 李富榮議員 紹介로 提出)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과政治資金에 관한法律改正에 관한請願

(1997년6월10일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12-1 삼선빌딩 4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영길로부터 千正培議員의 紹介로 提出)

選舉管理委員會法改正에 관한請願

(1997년6월18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공명 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손봉호外 4人으로부터 安商守議員外 3人의 紹介로 提出)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에 관한請願

(1997년6월18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공명 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손봉호外 4人으로부터 柳宣浩議員外 3人의 紹介로 提出)

政治資金에 관한法律改正에 관한請願

(1997년6월18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공명 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손봉호外 4人으로부터 秋美愛議員外 3人의 紹介로 提出)

政黨法改正에 관한請願

(1997년6월18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공명 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손봉호外 3人으로부터 李美卿議員外 3人의 紹介로 提出)

在外短期滯留國民의選舉權保障에 관한請願

(1997년6월27일 223. Rue Lecourbe 75015

Paris. France 심 탁으로부터 崔旭澈議員의 紹介로 提出)

政治關係과選舉管理委員會法改正에 관한請願

(1997년7월7일 서울시 종로구 도림동 60번지 도림빌딩 607호 한국유권자운동공동대표 김형문으로부터 安商守議員外 2人의 紹介로 提出)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에 관한請願

選舉管理委員會法改正에 관한請願

政黨法改正에 관한請願

政治資金에 관한法律改正에 관한請願

(이상 4건 1997년7월8일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8-2번지 백호빌딩 4층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 이창복으로부터 柳宣浩·鄭東泳議員外 6人의 紹介로 提出)

在外短期滯留國民의選舉權保障에 관한請願

(1997년7월9일 170. Bd Montparnasse 75014. Paris. France 재불천주교사제단 대표 장동하, Viale delle Mura aurelie. 400152 Roma Italia 재로마천주교사제단 대표 김일희外 172人으로부터 秋美愛議員 紹介로 提出)

政治關係法改正에 관한請願

(1997년7월15일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8-2 백호빌딩 4층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 김상곤으로부터 千正培議員의 紹介로 提出)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에 관한請願

(1998년2월7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44-16 고려빌딩 203호 전국선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을용으로부터 金炯昨議員의 紹介로 提出)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에 관한請願

(1998년3월24일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5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종성外 7人으로부터 鄭均桓議員의 紹介로 提出)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에 관한請願

(4월9일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5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 건外 2人으로부터 李美卿議員의 紹介로 提出)

政治資金에 관한法律改正에 관한請願

(4월9일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5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 건外 2人으로부터 李相洙議員의 紹介로 提出)

政黨法改正에 관한請願

(4월9일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5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 건外 2人으로부터 金洪信議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34건 8월13일자 회부됨.